

11.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인상으로

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

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(☎ 044-202-3323)

-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통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
-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%(327천명) 이하인 자에게 지원하였으나, '14.7월부터 소득하위 70%(364천명)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
- 아울러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(9.7만원 → 20만원)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.

<2014. 7월 이후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>

- 추진배경 :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기초급여 2배 인상 및 대상자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
- 주요내용
 - ① 장애인연금(기초급여) 인상 : 9.7만원 → 20만원
 - ② 지원 대상자 확대 : 327천명(소득하위 63%) → 364천명(소득하위 70% 수준)
- 시행(예정)일 : '14. 7월(잠정,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심의중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㉠ 장애인연금 확대 ○ 지원대상 확대 ○ 기초급여액 인상	○ 327천명(소득하위 63%) ○ 9.7만원 지원	○ 364천명(소득하위 70% 수준) ○ 20만원 지원으로 확대	장애인연금법 ('14.7월)
			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기반과 (044-202-3323)

12. 발달장애인 지원(성년후견지원, 부모심리상담서비스)

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(☎ 044-202-3345)

-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지원과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.
- 2013년도 9월부터 만 19세 이상 재가 발달장애인(장애인복지법상 지적·자폐성 장애인)에게 지원 중인 성년후견지원(후견심판 청구 비용 최대 50만원, 성년후견인 선임비용 월 10만원)을 확대합니다.
 -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 400명에 대한 후견심판 청구 소요 비용과 838명에 대한 성년후견인 활동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
- 또한, 2013년도 7월부터 전국가구평균소득 100%이하 발달장애인부모에게 지원 중인 심리상담서비스(2천명, 월 16만원 씩 6개월간 지원)도 2014년도 2천5백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.

<2014년도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내용>

- 추진배경 :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
- 주요내용
 - ①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지원 확대(성년후견 심판 절차 비용 지원 400명, 성년후견인 활동 비용 838명)
 - ②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서비스지원 확대(2천명→2천5백명)
- 시행일 : 2014년 1월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㉠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성년후견지원 '13.9월 시행 ○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'13.7월 시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 확대(성년후견 심판 절차 비용 지원 400명, 성년후견인 활동비용 838명) ○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확대(2천명→2천5백명) 	- ('14.1월)
			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(044-202-3345)

13.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 확대

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(☎ 044-202-3344)

□ 중증장애인에 대한 상시 보호체계의 일환으로 화재 등 사회적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**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이 대폭 확대**됩니다.

* ('13년) 20개 지역, 21백명 → ('14년) 80개 지역 , 100백명

- '13년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20개 시군구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으나,
 - 심신상태 또는 생활환경을 고려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**2014년 7월** 부터 서비스대상 지역과 인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.

☞(참고) [보건복지부 홈페이지](#) > [정책분야별](#) > [장애인활동지원](#) > [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](#)

<2014년도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사업 개요>

- **추진배경** : 화재 등으로 중증장애인이 잇달아 사망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**안전확보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**
- **주요내용**
 - ① 대상 지역 : 응급안전서비스에 대한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
 - ② 대상자 :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(1.2급 장애인)
 - ③ 서비스내용 :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화재·가스누출·응급호출 등 응급상황에 소방서와 연계하여 신속히 대처하고, 시군구별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안전확인 및 이웃주민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안전망 구축
- **시행일** : 2014년 7월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㉠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대상 지역 및 인원 확대	○ 20개 시군구 거주, 중증장애인 21백명에게 응급안전서비스 제공	○ 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 확대 - 80개 시군구, 중증장애인 100백명에게 서비스 제공	-
			('14.7월)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(044-202-3344)